

교섭요구 사실 공고문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교섭요구 노동조합

- 노동조합 명칭: 목원교원노동조합
- 대표자: 정재열 위원장
- 교섭 요구 일자: 2026년 9월 10일(목)

2. 공고 및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기간

- 공고 기간: 2026. 10. 1.(목) ~ 10. 8.(목)
- 교섭 요구 기한: 2026년 10월 8일(목) 24:00까지

3.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방법

- 위 교섭 요구 노동조합 외에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2026년 10월 8일(목) 24:00까지 사용자에게 교섭요구서(노동조합 명칭, 대표자 성명, 요구 일자, 조합원 수 기재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상기 기한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4. 공고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

- 공고된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, 공고 기간 중(2026년 10월 8일까지) 사용자(참조:교무과)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026. 10. 1.

목원대학교 총 장 이 희 학

